

##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7월 4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 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조인호 의원 외 8명
3. 개정이유
  - 2025. 7. 1.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,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

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-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‘단장’ 추가  
(안 제2조제1항제2호)

#### 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제3항

#### 6. 예고기간 : 2025. 7. 4. ~ 2025. 7. 9.(초일불산입 5일간)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 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사운영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  
(전화: 061-550-5906, FAX: 061-550-5907)

##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##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(전화: 061-550-590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------------	--	--	--
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

완도군의회 조례 제 호

##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과장”을 “과장, 단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범위) ①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, 담당관, <u>과장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 (범위) ①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 <u>과장, 단장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지방자치법

-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